

(별표 4)

【허용기준 공통사항】

※ 공통사항은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한다.

구분	내용	국가유산유형	적용범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허용범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전체 유형	개별검토구역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기준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전체 유형	고도제한구역
경사지붕 기준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전체 유형	고도제한구역
용도범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 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식생과 관계있는 자연유산 (동굴, 번식지, 서식지 등)	
굴착규모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고도제한구역
땅깎기·흙쌓기 범위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풍수적 관계 및 지형과의 관계 등을 중시하여 원지형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산	고도제한구역
건축규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전체유형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건설공사 및 토목시설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 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도시계획 변경시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 공통사항은 적용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구역에 적용함